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된 구미시 들성 생활체육센터 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 무 명: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 관리 운영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5
 - 「지방공기업법」 제1조 ~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 제22조의2

○ 위탁사무: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관리 운영

○ 시설개요

- 시설명: 들성생활체육센터
- 소재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78
-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73㎡
- 층별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비 고
지하 1층	532.7	전기실, 기계실, 감시실	
지상 1층	1,708.95	수영장(25mX6Lane), 사무실 등	주차79면
지상 2층	687.06	다목적실, 어린이놀이방 등	
지상 3층	1,643.86	헬스장, GX실, 다목적체육관 등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구미시설공단)

○ 소요예산: 1,927,225천 원(2024년)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세입	-	572,753	572,753	572,753	572,753	2,291,012
	소계(a)	-	572,753	572,753	572,753	572,753	2,291,012
세출	노무비	1,025,070	1,055,822	1,087,497	1,120,122	1,153,725	5,442,236
	경비	627,782	646,615	666,014	685,994	706,574	3,332,979
	일반관리비	99,171	102,146	105,211	108,367	111,618	526,513
	부가세	175,202	180,458	185,872	191,448	197,192	930,173
	소계(b)	1,927,225	1,985,042	2,044,593	2,105,931	2,169,109	10,231,900
합계(a-b)		△1,927,225	△1,412,289	△1,471,840	△1,533,178	△1,596,356	△7,940,888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 산출 결과('23. 3.)

※ 물가반영률 연 3%적용

4. 참고사항

○ 들성생활체육센터 사진대지

□ 위 치 도



□ 조 감 도



○ 위탁비용 산출내역

(단위 : 천원/년)

구 분		들성생활체육센터	비 고
인 건 비	직 접 인 건 비	1,025,070	
	소 계	1,025,070	
경 비	보 험 료	106,010	
	복 리 후 생 비	11,169	
	수 도 광 열 비	70,566	
	전 력 비	144,441	
	연 료 비	162,000	
	수 리 수 선 비	86,012	
	소 모 품 비	30,003	
	지 급 수 수 료	17,582	
	소 계	627,782	
순 운 영 비		1,652,852	
일 반 관 리 비		99,171	순운영비의 6%
운 영 비 합 계		1,752,023	
부 가 가 치 세		175,202	운영비의 10%
연 간 위 탁 비 용		1,927,225	운영비 + 부가세

※ 2023년 운영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수입은 2022년 이용인원 기준으로 산정

※ 코로나-19이전 이용인원 기준 수지비율은 66.1%(올림픽기념생활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2023년 11월 시범운영 및 2024년 1월 개관 예정인 들성생활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위탁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시설규모에 수영장, 헬스장, GX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시설공단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운영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현재 구미시는 공공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례 근거가 없으나 지방자치법을 폭넓게 해석하여 동의를 받아오고 있음. 향후 집행기관 및 관련 소관부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의회 동의 절차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